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도중복장애 학급 설치 기준 완화 요청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37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덕흠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24.
3. 회부연월일 : 2025.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특수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② (생략) <u><신설></u>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제2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u> (생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7조제1항1)은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 과정, 초등·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별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인원 기준이 정해짐.

구체적으로 유치원 과정의 경우 4인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6인,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7인을 기준으로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2)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 대하여는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제1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순회교육의 경우에도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특수교육법」 제15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항제11호는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중 한 가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³⁾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다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로 구분하고 있음.

< 중도중복장애 · 시청각장애 학생 현황 >

(단위: 명, '24.4.1. 기준)

연도	학교구분		유	초	중	고	합계
2024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18	219	114	182	533
		시청각장애	-	-	-	1	1
		소계	18	219	114	183	534
	일반학교	중도중복장애	12	102	40	48	202
		시청각장애	-	-	1	-	1
		소계	12	102	41	48	203
합계		30	321	155	195	737	

자료: 교육부

종래 「특수교육법」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 2021년 12월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준에 포함되도록 법 제15조가 개정되었고, 해당 규정 개정과 함께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에는 학급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법 제27조제2항을 개정하였음.

한편,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주체는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인 데 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는바, 현행 규정상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의무의 주체가 상이하여 개별 학교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특수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제2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려는 취지이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그 기준을 제한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학급 설치권자가 교육감에게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경우 법 제27조제2항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급 관리와 수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의 장이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급 설치 기준이 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참고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률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의 무분별한 요청이 우려되므로 요청이 가능한 범위를 “‘중도중복장애’로 진단·평가된 자가 배치된 특수학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반대로 한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므로 설치 기준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급”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개정안의 설치 기준 하향 조정 요청 요건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설치 기준 하향 조정의 요건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개정 취지에 이견 없으나 법률 개정 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교원 증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함께 개정하여야 하므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6